

## 2. 농촌지도역량강화 및 기반조성

### 가.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

#### (1)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-229-5842)입니다

#### (가) 특화농업기술센터(시범 및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)

##### 1) 목 적

- 농업기술센터 중 미래지향적이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형별 우수 센터를 선정·제시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
- 선발된 센터의 핵심 역량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특화작목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을 선정 추진

##### 2) 추진방향

-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되
-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부여로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의 추진 효과 극대화
- 선발된 유형 분야 중심사업 수행으로 해당 분야 발전모델로 육성

##### 3) 추진계획

##### 가) 예산내역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구 분	개소수	개소별지원액	총 사업비
계	31	70~490	1,000
○ 시범농업기술센터 육성	1	490	700
○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	2	70~140	300

\* 시범농업기술센터는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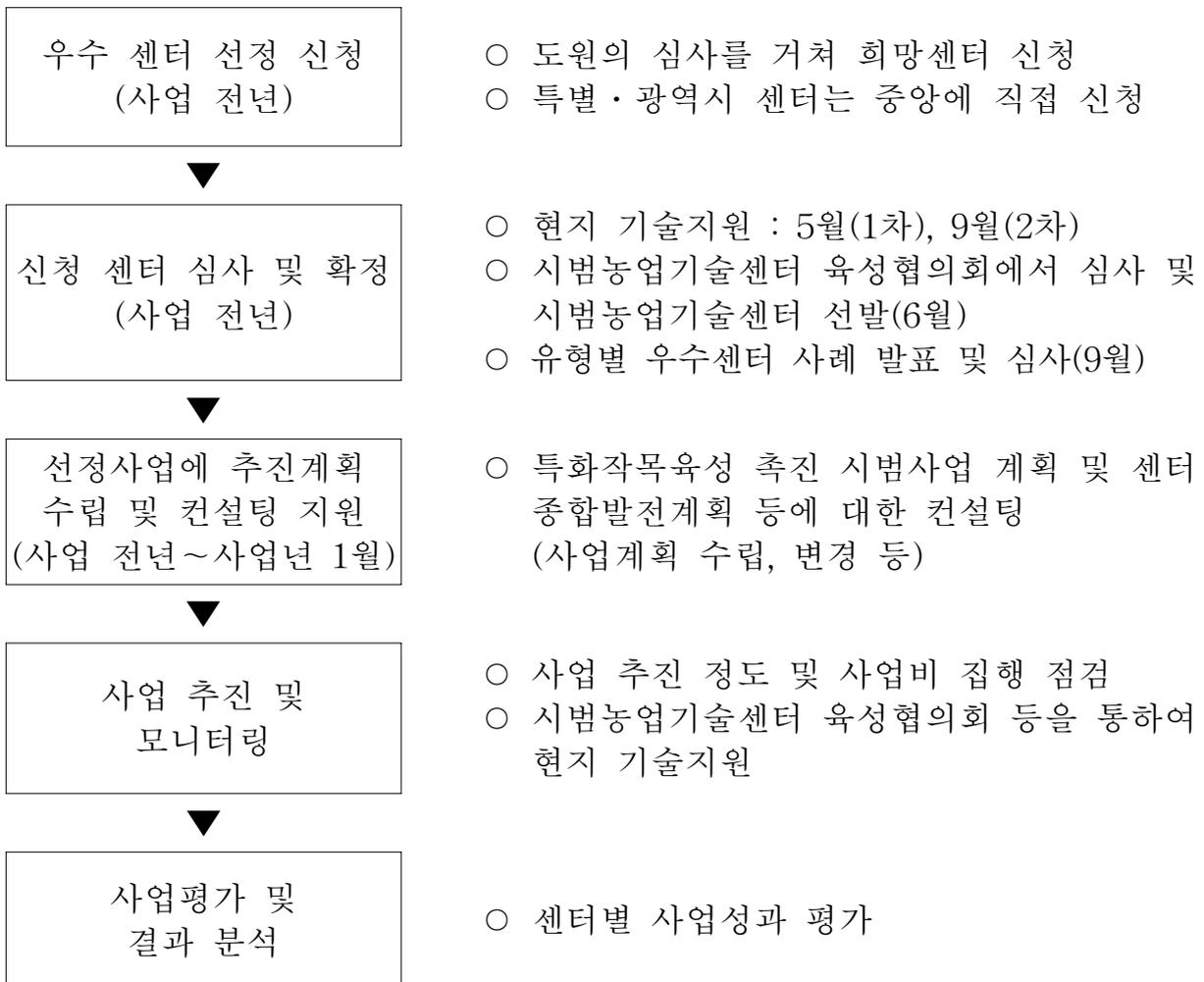
\* 지원조건 : 국비 70%, 지방비 30%

## 나) 사업내용

- 특화작목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센터시설 설치, 장비 구입비 등
-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비
- 기타 실증시범사업비 등

다) 사업대상 : 센터, 농가·단지, 품목별농업연구모임

## 라) 센터 선정 및 사업추진 절차



## 마) 사업추진요령

- 사업 수행주체는 시군농업기술센터이며 업무내용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자치단체를 통하여 농업인 등에 대한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
-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책임 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 등의 수요가 많으며 시범효과가 높은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

- 예산과목이 자치단체 자본보조(412-01)사업비로 지원되므로 성격에 맞는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되 아래와 같은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음
  - 사업목적인 지역특화작목육성에 직접적 관련이 적은 센터 사무실 환경 개선(개·보수, OA사무실 설치, PC구입 등)과 차량구입비, 국내외 여비, 소모품 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.
- 사업추진 중 특별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도원을 경유하여 중앙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

### 바) 추진 순기표

세부내용	추진시기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○사업 선정	[Progress bar from 1 to 1]											
○사업 계획 수립	[Progress bar from 2 to 2]											
○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	[Progress bar from 3 to 10]											
○사업평가 및 결과분석	[Progress bar from 11 to 11]											

### 사) 기대효과

- 지방화 이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중 유형별로 우수센터를 선정하여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

### 아) 지원대상 선정결과

- 시범농업기술센터 : 남양주시
-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: 2유형 2개 시군
  - 농업인대학 운영 : 우수 양평군, 140백만원(국비)
  - 농촌생활향상 : 장려 여주군, 70 백만원(국비)

### 자) 행정사항

- 사업추진 계획 및 결과를 중앙에 보고
  - 사업계획 보고 : '08. 1. 31일한
  - 추진결과 보고 : '08. 12. 30일한

<붙임 1>

##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 보고양식

<사업추진 계획보고(1. 31한)>

사업명 :

(○○도, 시·군)

목 적

○

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비 투자계획

(천원)

세부사업별	국비	도비	시군비	자부담	사업수행 주체
○					
○					

○ 주요내용(사업량,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등)

-

성과지표 설정(지표명만 제출)

○ 기본지표(1종) : 사업 추진전후의 소득증가율

- [사업전 해당농가(단지,지역)의 소득/사업후 해당농가(단지,지역)의 소득] × 100

○ 선택지표(2종) : 재무지표, 00지표

- (붙임 참고자료 활용 1개 이상 선택 기재)

기대효과

○

<사업추진 결과보고(12. 31한)>

사업명 :

(○○도, 시·군)

사업비 집행 결과

세부사업별	집행액(천원)					비고
	계	국비	도비	시군비	자부담	
계						
0						
-						

주요 추진내용

- 사업량, 추진시기, 세부사업별 내역 등
- 

주요 성과

- 
- 

성과지표

구분	사업전		사업후		지수	비고
소득증가율	소득	천원	소득	천원		
비용절감율	비용	천원	비용	천원		
매출증가율	매출	천원	매출	천원		
선택지표						

금후계획

- 

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

- 

※ 관련사진 첨부

<사업계획변경시>

사업명 :

(○○도, 시·군)

변경개요 및 사유

- 
- 

목 적(변경후)

- 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
- 사업비 투자계획(천원)

세부사업별	국 비	도 비	시군비	자부담
○				
○				

- 주요내용(사업량,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등)

-

성과지표 설정(지표명만 제출)

- 기본지표(1종) : 사업 추진전후의 소득증가율
  - [사업전 해당농가(단지,지역)의 소득/사업후 해당농가(단지,지역)의 소득] × 100
- 선택지표(2종) : 재무지표, □□지표
  - (붙임 참고자료 활용 1개 이상 선택 기재)

기대효과

- 
- ※ 첨부 : 해당센터소장 명의의 각서(이월, 불용없이 정상집행 약속)

<참고자료>

## 사업 성격에 따른 성과지표 선정 참고자료

### □ 서비스 지표

○ 정 의 :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 사업 수행에 있어서 서비스적 관점으로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처리건수와 이용자 만족도로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

\* 서비스는 기반 조성 및 기술센터내의 시설물 보강 또는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인한 서비스 처리건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됨.

○ 산출 방식

- 센터 이용자 증가율

· (사업 수행후에 이용자수 / 사업 수행전 이용자수) X 100

- 센터 이용자 만족도

· 이용자에 대한 설문지 조사 및 반복이용횟수

### □ 학습 및 성장지표

○ 정 의 :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 사업 수행에 있어서 학습 및 성장의 관점에서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 학습에 참여율 및 사업의 확장 전이를 판단함으로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 판단 지표.

\* 학습 및 성장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교육 및 향후 사업으로의 확장 및 전이를 판단하는데 합리적인 지표라고 판단됨

○ 산출 방식

- 사업별 가입율

· (사업 수행 후 사업별 가입자수 / 사업 수행 전 사업별 가입자수) X 100

- 교육 참여율

· (사업 수행후 교육 참여수/ 사업 수행전 교육 참여수) X 100

## □ 재무지표

- 정 의 :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량적 지표이며, 주로 비용과 매출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핵심평가 항목으로 측정하기에 적합

\* 모든 사업이 대부분 상기 지표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한 지표임

### ○ 산출 방식

- 비용절감율

· (사업 수행 후 비용액/사업 수행 전 비용액) X 100

- 매출증가율

· (사업 수행 후 매출액/사업 수행 전 매출액) X 100

## □ 고객지표

- 정 의 : 대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홍보 및 기반 환경조성 사업 등으로 비재무적 요소가 많음으로 고객 만족도를 통한 지표로 산정

\* 농촌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열악한 농촌 환경의 개선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됨.

### ○ 산출 방식

- 고객 만족도

· 설문지를 통한 고객 설문지 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

## (나)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-229-5842)입니다

### 1) 목 적

- FTA 체결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등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분야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발굴 육성
- 농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한 특화작목 재배 신기술 집중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

### 2) 추진방향

-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과 생산시설 지원사업
  - 소비자 대상 농촌지도 과제 : 농촌관광, 도시농업 등
  - FTA대응 농가소득과 연결되는 유형별 패키지화 시범사업
  -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산·학·연 종합지도 등

### 3) 추진계획

#### 가) 사업별 예산내역

(단위 : 개소, 백만원)

세부 사업명	사업량	사업비
○ FTA 대응 경쟁력 제고사업	2	860

#### 나) 사업내용

- FTA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화품목 육성

다) 지원대상 : 시군 농업기술센터

#### 라) 추진 순기표

세부내용	추진시기													
	전년 6월	전년 7월~	1	2	3	4	5	6	7	8	9	10	11	12
○사업 신청														
○사업 선정 및 기술지원														
○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														
○사업평가 및 결과분석														

#### 4) 시군별 지원내역

○ 추천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을 심의하여 배정

구분	시군	사 업 명	예산액 (백만원)		
			계	국비	지방비
	계		860	430	430
1	평택시	맞춤형 시설하우스 모델단지 조성	260	130	130
2	가평군	도시근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거점단지 육성	600	300	300

※ 지원조건 : 국비 50%, 지방비 50%

#### 5) 기대효과

○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 육성으로 농업발전과 품목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 
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

#### 6) 행정사항

○ 사업 계획 보고 및 결과보고는 특화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준함

※ 사업추진결과 보고는 특화농업기술센터 보고양식으로 12/31일까지 보고

<붙임 1 : 사업신청서 양식>

사업명 :

1. 사업목적

현황 및 문제점

- 
- 

필요성

- 
- 

목적

- 
- 

※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

2.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
- 총사업비 : 7억원 이내
- 사업규모 :
- 지원형태 : 자치단체 자본보조
- 지원조건 : 국비 50%, 지방비 50%
- 사업유형 :

### 3. 산출근거(자세히 작성)

항 목	산 출 내 역

### 4. 세부 추진계획

### 5. 기대효과

### 6. 검토의견(도농업기술원에서 작성)

※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위한 참고자료 첨부가능

## (2)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-229-5842)입니다

### 1) 목 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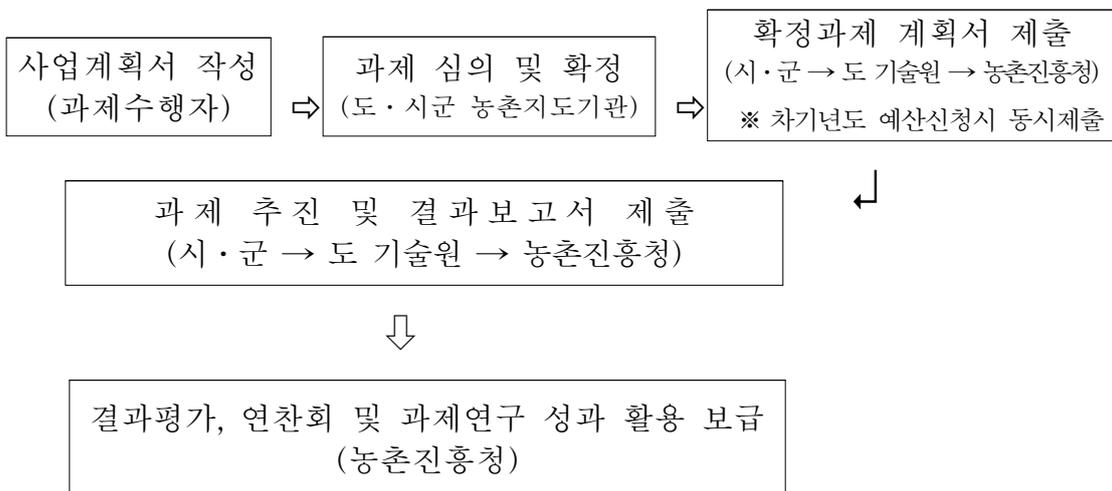
- 지식·정보화시대를 맞아 지도공무원의 현장과제연구 및 실증 시험을 통한 전문능력 향상과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 기여

### 2) 방 침

- 일선 지도공무원의 현장과제 연구 활동을 통한 전문능력향상 촉진
- 농업인 현장애로기술의 해결 및 새로운 아이디어 실천을 위한 실증 시험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 구성
- 평가회 개최를 통한 성과관리 강화

### 3) 사업내용

- 사업량 : 12과제(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)
- 사업비 : 60백만원(10백만원×12과제, 국비 50%)
- 사업기간 : 1년(당해년도)
- 지원대상 : 지방농촌지도기관 소속 지도공무원
  - 공동과제 :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지도공무원 2명 이상 또는 지역 농업인과 공동으로 수행코자 하는 과제
  - 개별과제 : 관할 지역농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하여 개별연구가 필요한 과제
- 추진절차



○ 사업내용

-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
-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제
- 새로운 아이디어 활용 또는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새로운 기술 도입이 필요한 과제
-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
- 지역농산물의 명품화(브랜드화)로 농가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제 등

○ 예산편성

-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 주 수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비목을 적의 편성(편중편성 지양)  
예) 연구개발비, 연구재료 및 설비, 연구관리비(평가회 경비 등), 수용비 및 수수료, 기술정보활동비 등

○ 과제선정 절차 및 추진요령

- '09년 사업수행자의 사업계획신청서 작성·제출 : '08년 6월(양식1)
-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50%이상 부담이 가능하고 사업이 당년에 완료되지 않고 계속 수행이 필요한 경우는 지방비 추가 지원이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
- 각 실증시험 연구사업장에는 다음내용의 표찰 건립으로 사업성과 거양  
· 과제명, 사업시기, 추진내용, 수행자 소속, 직, 성명
- 사업기간 중 과제수행자의 변경시는 즉시 관계부서와 협의 및 변경조치한 후 통보
- 태풍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즉시 관련증빙자료(사진 등)를 첨부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종결처리

4) 사업수행 결과 평가 및 활용

- 평가회 개최 :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향후 발전 방향 모색
  - 시군별로 중간(7월), 결과(12월)평가회 실시
  -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: 12월 30일 한(양식2)
- 결과활용
  - 우수 성과는 자체 시범사업으로 개발하여 지역농업발전에 기여
  - 보고서를 발간하여 농업인 교육용으로 활용

### 5) 기대효과

- 현장연구 활동을 통한 대 농업인 지도역량 극대화
-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
- 현장 실증·실습을 통한 실증 새 기술의 신속한 보급
- 지역농업의 명품 브랜드화를 통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

### 6) 시군별 배정내역

(단위 : 천원)

시도별	사업량	사업비	시도별	사업량	사업비
계	12	60,000	안 성 시	1	5,000
평 택 시	1	5,000	여 주 군	1	5,000
이 천 시	1	5,000	양 평 군	2	10,000
김 포 시	1	5,000	연 천 군	3	15,000
광 주 시	2	10,000			

### 7) 추진 순기표

세 부 내 용	추진시기(월)												
	12	1	2	3	4	5	6	7	8	9	10	11	12
○ 사업계획 신청서 작성	■												
○ 사업 심의 및 확정		■	■										
○ 사업 추진요령 연찬회 개최			■										
○ 사업 추진(과제수행자)		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	■
○ 중간평가회 개최								■					
○ 결과평가회 개최, 보고서 제출 활용보급													■



## 2. 과제수행 세부계획

과제명 :

### 가. 필요성

### 나. 수행내용 및 방법

#### (1) 사업개요

○ 목 적

-

○ 사업추진방향

-

#### (2) 세부추진계획

○

-

### 다. 연구개발 현황 및 시범요인

○

-

### 라. 예산 투자(집행) 계획

항 목	규 모	금액(천원)	비 고

※ ‘규모’는 항목에 맞게 적의 설정. 예) ha, 종, 대, 명, 회 등

### 마. 사업추진 순기표

항 목	월 별 순 기 표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
### 바. 기대효과

○

### 사. 현장과제 연구 결과의 활용계획

○

<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작성 요령 >

- 과제수행신청자 : 서명 및 날인(공동수행 할 경우 연명 날인)  
 ※ 관내 선도농업인과의 공동수행 가능
- 수행내용 및 방법 : 수행코자하는 연구개발과제 전반에 대한 세부 추진 내용 및 수행 방법을 작성(6차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)
- 연구개발 현황 및 시범요인 : 과제에 대한 현재의 연구개발 현황, 본 과제에서 수행코자 하는 시범요인 등
- 예산투자계획 : 항목별 소요예산(집행계획) 규모를 기입
- 사업추진 순기표 : 계획수립, 항목별 추진 계획, 결과보고 등 주요 단계별 추진 항목을 도시

<양식 2> 결과보고서 작성

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(요약)

과 제 명			
과제수행자		직	
분 야		소 속 기 관	
사 업 장 소		사 업 기 간	

1. 목 적
2. 수행내용
3. 연구개발 현황 및 시범요인
4. 예산집행 실적

항 목	규 모	금액(천원)	비 고

※ ‘규모’는 항목에 맞게 적의 활용. 예) ha, 종, 대, 명, 회수 등

5. 사업추진 순기표

항 목	월 별 순 기 표											
	1	2	3	4	5	6	7	8	9	10	11	12

6. 문제점 및 기대효과

#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 결과보고서

## 목 차

### I. 서 언

1. 현 황
2. 기술개발의 필요성
3. 연구개발의 목적과 범위

### II. 기술개발 수행내용

1. 재료 및 방법
  - 가. (세부 과제별)
    - (1)
    - (가)
    -

### III. 기술개발 결과 및 고찰

1. 결과 및 고찰
  - 가.
    - (1)
    - (가)

### IV. 지도사업 활용 방안(기대효과)

- 1.
- 2.

#### <본문작성요령>

1. 본문의 순서는 I, 1, 가, (1), (가), ①, ㉠등으로 하고, 글씨체는 휴먼명조로 하며
  - I 은 16호, 1은 15호, 가는 14호, 본문은 13호.
  - 단, 본문의 내용 중 중요부문은 고딕체로 사용.
  - 편집용지 : A4
    - 좌우여백 : 25.4mm, 위·아래 : 12.7mm, 머리말·꼬리말 : 12.7mm
    - ※ 줄간격 : 180%를 기본으로 하되 160~200%범위내 조정
2. I 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
3. 페이지 번호는 하단 가운데에 표기
4. 각주(註)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본문과 구분하여 표기
5. 결과보고서 본문은 서언부터 시작하고, 페이지 매김도 서언부터 시작한다.
  - 단, 삽입물이 있을 때는 그 삽입물의 크기에 불문하고 1면을 한 페이지로 하여 일련번호를 붙임
6. 한글, 한문, 영문을 혼용

### (3)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-229-5842)입니다

#### 1) 목 적

- 농업·농촌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
- 지식·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분야별 최고전문가 육성
-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 컨설팅 강화

#### 2) 추진방침

- 농업인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술수요에 부응하는 전문능력 향상
- 회원 및 조직의 정예화로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의 주역으로 육성
-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농업인 컨설팅과 연계운영
- '08년 육성 목표 : 51개회 2,640명(가입 대상 지도공무원의 60% 수준)

#### 3) 예산내용

- 사 업 비 : 600백만원(국비 50%)
- 지원대상 : 전문지도연구회 가입 지도공무원
  - 51개 단위 전문지도연구회원에게 우선 지원하되, 단위연구회 및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임원에게는 별도 추가지원
- ※ 2008년 신규회원 활동비는 시군 자체 예산 확보 추진

#### 4) 추진계획

##### □ 농업인컨설팅 중심의 과제교육 강화

- 연중 과제교육은 2일간 4회 모임으로 정례화하고 기술자문관과 전담지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11. 7일까지 완료
  - 과제교육중 2회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중심의 컨설팅 등으로 추진
  - 온라인을 통한 교육은 1회에 한하여 인정
- 연수 프로그램이나,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일간 실시 가능(첫째날 10:00에서 마지막날 13:00까지 운영)
- 경쟁력이 없는 단위연구회는 통·폐합 추진
- 자기학습 및 사이버 과제교육 정착으로 전문능력 향상
- 단위연구회별 과제자료집 및 회지 제작 활용

## □ 자율역량 개발 및 성과관리 강화

- 단위연구회별 「가이드북」 자체 제작 활용
  - 단계별 수준을 정한 「가이드북」을 제작하여 자율적 능력 배양
- 국가기술자격 취득 강화
  - 입회 후 3년 이내에 관련분야 기사 이상 취득 적극 권장
- 회원별 현장연구논문 연간 1건 이상 발표(서면 제출)
  - 전문지도연구회 홈페이지 ‘연구과제’란에 게재하여 정보 공유
  - 우수논문 포상금 확대 및 종합평가회시 발표
- 1회원 1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지원
  - 1회원 1농업인연구모임을 선정하여 월별 1회 이상 정례 지도
  -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술 및 직거래 등 유통 개선 지도
- 연말 평가를 성과위주로 전환하여 내실화 추진
  - 인센티브 차별화로 자율성장 지원 : 시상, 포상금 확대 지속추진

## □ 기술자문관 및 전담지원제도 운영 개선

- 과제교육 추진시 기술자문관과 전담직원과 협의 추진
- 전담직원을 중앙지도직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추진
  - 1연구회 육성으로 안정적 자율성장 지원
- 활동 우수 기술자문관 및 전담직원은 인센티브 제공

## □ 조직운영 및 회원관리 강화

- 신규 전문지도연구회 결성
  - 신규 연구회 결성을 희망하는 일선 지도공무원 20~50명의 요구에 따라 농촌지원국 담당부서와 한지협 임원진의 타당성 검토 후 결정
  - ※ 희망 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결성 불가
- 전문지도연구회 신입회원 가입
  - 연초 1회에 한하여 업무중심으로 신입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연구회에 한하여 허용
  - 소속 농촌지도기관장의 추천 공문과 가입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농촌진흥청(사무국)에 제출

- 농촌진흥청은 제출된 회원의 가입여부 등 자격은 한지협 및 단위 연구회 임원진과 협의하여 결정
- 중앙단위 신입회원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회원 자격 부여
- 기존 회원의 소속연구회 변경
  -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기관장이 공문으로 변경 신청한 회원을 대상으로 연초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,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단위전문지도연구회에 한하여 가능
  - ※ 단, 3년 이내에 2회 이상 소속연구회를 변경할 수 없음
- 활동 부진 회원 자격 제한
  - 활동 부진으로 '08년 초에 제명된 경우는 3년간 재가입 불가
  - 활동이 부진하거나 관련 요건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제명
    - 연간 2회 이상 과제교육에 불참한 경우나 단위연구회에서 제명 건의시
    - 연구회 활동이 불가능하여 탈퇴를 희망한 경우
- 명예회원제 도입으로 종적·횡적 활동 강화
  - 농촌지도관 승진 회원의 경우 정회원에서는 제외되나 소속 연구회 고문 또는 특별회원으로 위촉하여 지속 참여 가능
- 농촌지도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
  - 전문지도연구회의 과제교육을 통한 농업현장 지원 강화 : 농산물수출 지원, 농기계수리봉사, 교육 등
  - 농촌지도자회, 생활개선회, 4-H회 등 학습단체 활동 지원

## □ 유관기관·단체와의 협력 강화

- 연구기관 및 연구공무원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
  - 과제교육시 유관 지역특화시험장과 협력 추진
  - 현장 사례 및 관련 정보 공유, 현장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등 상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협력 관계 유지
    - 연구사업설계심의회 및 평가회에 가급적 단위연구회 임원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장애로기술연구의 필요성 강조
-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위한 기술자문관 위촉 운영
  - 연구회별 해당 지도관 및 연구관을 기술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과제교육 특강, 기술지원 등 활동 강화

- 국내외 농업동향 및 농촌진흥사업 관련 기술정보 교류
  - 지역별 창안기술 검토, 애로기술 수렴 등 연구사업에 반영
- 연구회 활동 후원을 위한 관계 전문가의 고문 및 명예회원 위촉
  - 연구·지도직 공무원, 학계 권위자 등을 고문 및 명예회원으로 자체 위촉 활용
- 농업관련 포상, 사업 등 민간단체 활동지원 참여
  - 세계농업기술상, 대산농촌문화상 및 현장과제 연구개발 사업 등에 적극 참여 권장
- 지리적 농업적 여건에 따라 인근 2~3개 시군농촌지도기관간 전문가 상호 연계 활동 확대
  - 연구회 회원 중 전문 강사 요원 상호 교환 활용
  - 농업인 교육, 시범사업 추진, 소규모 작목 컨설팅 등 사업의 공동 추진 방안 모색(도별 1~2개 시범운영)

## 5) 기대효과

-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영농 현장 문제의 신속 해결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
- 농업인의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품목별 전문능력 증진

## 6) 시군별 배정내역(국비)

(단위 : 천원)

시군별	사업량	사업비계	국 비	시군별	사업량	사업비계	국 비
<b>합 계</b>	<b>277</b>	<b>129,720</b>	<b>64,860</b>	안 성 시	23	10,718	5,359
수 원 시	3	1,398	699	여 주 군	16	7,456	3,728
성 남 시	3	1,398	699	양 평 군	21	9,786	4,893
안 양 시	2	932	466	고 양 시	10	4,660	2,330
안 산 시	5	2,330	1,165	의정부시	3	1,398	699
용 인 시	21	9,786	4,893	남양주시	16	7,456	3,728
평 택 시	29	13,514	6,757	파 주 시	14	6,524	3,262
시 흥 시	8	3,728	1,864	구 리 시	1	466	233
화 성 시	9	4,194	2,097	포 천 시	10	4,660	2,330
이 천 시	29	13,514	6,757	양 주 시	11	5,126	2,563
김 포 시	8	3,728	1,864	가 평 군	12	5,592	2,796
광 주 시	12	5,592	2,796	연 천 군	11	5,764	2,882

#### (4)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-229-5842)입니다

##### 1) 목 적

- 선진 농업기술 경쟁국 및 수출 대상국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수집, 확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
- 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 배양 및 전문능력개발 동기 계발

##### 2) 추진방침

- 선진농업기술 경쟁국 및 수출대상국 중점 연수
- 농업기술 비교 우위국, 농축산물 수출 경쟁국, 기술정보가 집중된 농업 박람회, 전시회, 학술회의 등 최대 활용

##### 3) 추진 계획

- 연수대상 :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원 등 지도공무원
  - 일반연수 : 해당분야 업무담당자 또는 유사 업무담당자 7명
    - ※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수상(우수) 시군담당자(1개 시군)
  - 전문기술연수 : 관련분야 업무담당자 14명
- 기 간 : 1주~2주 내외
- 연 수 국 : 농업기술 경쟁국 중심 (일본, 유럽, 미국, 중국 등)
- 연수내용
  - 일반연수 : 기술집약 농업, 가공, 화훼, 축산 등 새기술 중심 연수
  - 전문기술연수 : 테마과제 중심으로 외국의 전문연수기관에 위탁 현장 연수
- 사업배정
  - 전문기술연수 인원이 배정된 시군은 반드시 전문기술연수에 참가하여야 함
    - 전문교육기관의 위탁에 따른 교육경비 확보 : 1,500천원/1인당
  - 연수인원 선정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선정 할 수 있도록 추천
  - 시군에서는 연수 지역별 감안하여 연수 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방비 추가 확보방안 강구

#### 4) 핵심 추진 사항

- 주요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연수 계획 수립
  - 기간, 일정, 장소 등 연수 필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된 과정을 중심으로 연수 계획 확정
  - 분야별 적정한 인원 구성을 위하여 유사분야는 통합 추진
- 연수 프로그램의 분야별 특성화에 따른 연수 대상자를 엄격히 선발
  - 국비 및 국비보조에 의한 연수는 51개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 회원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담당자 우선 선발
  - ※ 관련 분야별 업무 담당자로 제한하며, 특히 전문연수의 경우 비전공자는 배제
  - 근무연수별 안배 등 실무 분야와 연계되지 않는 추천은 제외
  - 지방비라 할지라도 전공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에서 제외
-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경우 지도관 대상 특별프로그램 추진
  - 국제적 안목 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농업기술보급 추진체계, 제도, 정책개발 등과 관련한 실무 연수
  - 농촌지도사업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정보 교환 등
- 일반연수는 10일 내외의 단기출장을 원칙으로 추진하며, 지도기관 관리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과정에 추천
- 분야별 전문기관, 유관단체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섭으로 추진
  - 연수내용에 적합한 시기, 기간을 설정하여 심도 있게 추진
- 기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운영
  - 인접국가의 연수는 인원을 확대하고, 원거리 연수는 핵심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
- 우리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인접국가에 대한 집중 연수
  - 일본, 대만, 중국 등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 파악 및 현장조사
  - 대상국을 지역별·내용별로 나누어 중복되지 않게 연수팀을 구성

### 5) 추진 순기표

세 부 내 용	추진 시기											
	1월	2	3	4	5	6	7	8	9	10	11	12
○ 지방기관 수요조사 실시												
○ 심사후 계획 확정 시달												
○ 분야별 추진												
○ 보고서 작성												

### 6) 기대효과

- 선진농업국 및 수출경쟁국의 최신 농업기술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
-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으로 대농업인 현장 기술지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

### 7) 시군별 배정내역(국비)

(단위 : 천원)

시군별	사업량	사업비계	국 비	시군별	사업량	사업비계	국 비
<b>합 계</b>	<b>21</b>	<b>62,400</b>	<b>31,200</b>	여 주 군	1	2,200	1,100
성 남 시	1	3,500	1,750	양 평 군	1	2,200	1,100
안 산 시	1	3,500	1,750	고 양 시	1	2,200	1,100
용 인 시	2	6,000	3,000	의정부시	1	3,500	1,750
평 택 시	2	6,000	3,000	남양주시	1	3,500	1,750
화 성 시	2	7,000	3,500	파 주 시	1	2,200	1,100
이 천 시	1	2,200	1,100	포 천 시	1	3,500	1,750
광 주 시	1	3,500	1,750	양 주 시	1	3,500	1,750
안 성 시	1	3,500	1,750	가 평 군	1	2,200	1,100

#### ※ 전문연수 참가 현황(전문연수 참가시군에서는 반드시 참가)

- 시설원예 : 안산, 평택, 의정부, 양주
- 양 돈 : 용인, 화성2, 안성
- 품목조직 : 광주, 포천
- 고품질쌀 : 용인, 평택
- 지역사회개발 : 성남, 남양주

## (5) 농촌지도대상 선발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기술기획과 (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-229-5842)입니다

### 1) 목 적

-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으로 농업·농촌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, 시상함으로써 지도공무원 사기진작 및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기여

### 2) 추진방향

- 지식농업시대에 참신한 아이디어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·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, 시상
-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상자 선발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
- 수상자에게 해외농업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

### 3) 근거법령

- 지방농촌진흥기관상 및 농촌지도대상규정(훈령 제607호)

### 4) 농촌지도대상 선발 및 세부시상 요강

- 제도개선후 세부시상 요강 별도시달 계획